

## ■ 별첨 1.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\* 정관 변경(안) 신규조문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제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중략)</p> <p>38.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</p> <p>(추가)</p>	<p>제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중략)</p> <p><u>38. 프랜차이즈업, 음식업 (추가)</u></p> <p><u>39.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</u></p>	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
<p>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</p> <p>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<u>50,000,000주</u>로 한다.</p>	<p>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</p> <p>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<u>100,000,000주</u>로 한다.</p>	발행한 주식총수(수권자본금) 확대
<p>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개선, 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2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15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개선, 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5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④ (현행과 동일)</p>	전환사채 발행 규모 확대
<p>제16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 개선, 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</p>	<p>제16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 개선, 사업의 다각화, 해외 진출,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</p>	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확대

<p>내외 금융기관,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국내외 금융기관, 및 기관투자자, 법인투자자, 또는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3.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②~⑤ (현행과 동일)</p>	
<p>제17조 (교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2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7조 (교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<u>500억 원</u>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교환사채 발행 한도 확대
<p>[부칙]</p> <p>(신설)</p>	<p>[부칙]</p> <p>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p>	정관변경에 따른 부칙개정

## ■ 별첨 2. 이사 선임의 건

[이사 선임 세부내역]

성명	출생년월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 경력 (현직포함)
김창욱	1961.06.28	3년	재선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</li> <li>-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부장 (1984~2015)</li> <li>-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상무 (2015~2018)</li> <li>-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(2018~2019)</li> </ul>